

특허법인 아이더스
수출바우처사업 전담기관
서비스 소개

목차

특허법인 아이더스 소개

특허법인 아이더스 변리사 소개

수출바우처 서비스 소개

01

특허법인 아이더스 소개



특허법인 아이더스 개요

본 법인은 2003년 설립되어 2019년 12월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고객사에서 개발한 기술, 지식, 정보, 아이디어, 노하우, 브랜드, 디자인 등 무형의 자산을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하여, 해외 및 국내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도록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가번호 제 160 호



특허법인 설립인가서

- 법인의 명칭 : 특허법인 아이더스
- 주사무소 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A동302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 대표변리사 

「변리사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법인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2019년 12월 23일

 **특 허 청 장**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 185-81-01691

법인명(단체명) : 특허법인 아이더스
대표자 : 김무경

개업연월일 : 2020년 01월 02일 법인등록번호 : 120171-0030803
사업장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A동 302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본점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A동 302호(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사업종류 :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변리사업
발급사유 : 재발급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 : 여() 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전자우편주소 : 

2022년 03월 17일

연수세무서장 

 국세청

 인가번호 제 1541 호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증

법인(또는 단체)명	특허법인 아이더스	법인(사업자)등록번호	120171-0030803	
연락처	전화번호	010-5337-3599	팩스번호	032-209-8168
	주소	21904 인천 송도과학로 32 (송도동) 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5동2202호		
대표자명	김무경	생년월일	1973.01.16	
취급하고자 하는 저작물 등의 종류	어문, 음악, 영상, 연극, 미술, 사진, 건축,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기타			
취급하고자 하는 권리의 내용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 공연권, 전시권, 대여권, 방송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01월 2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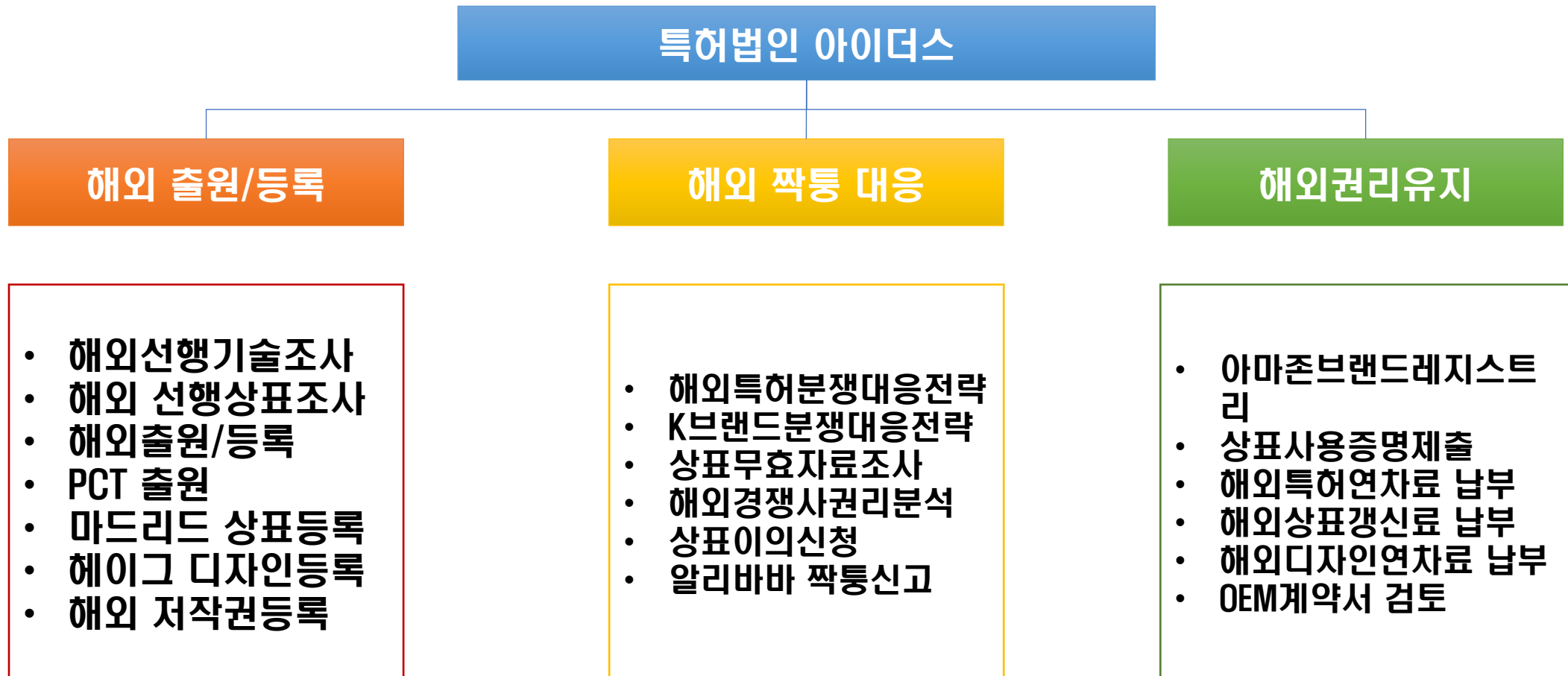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 

사무실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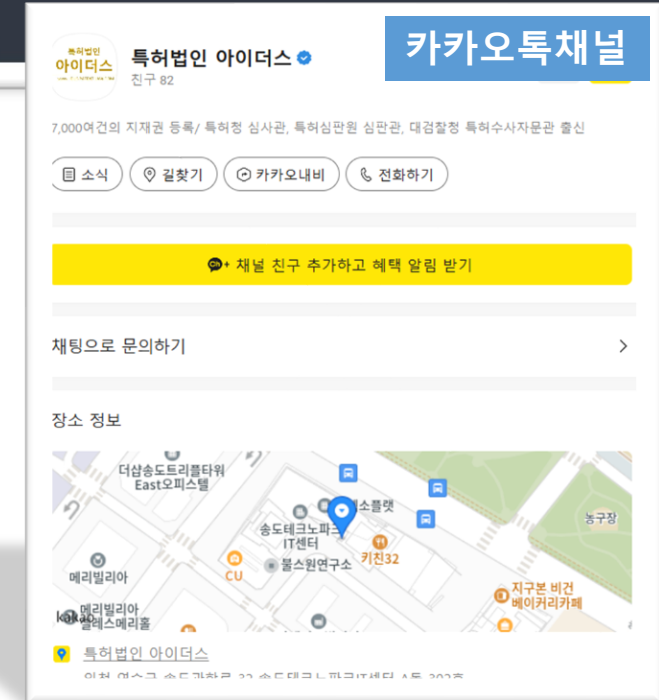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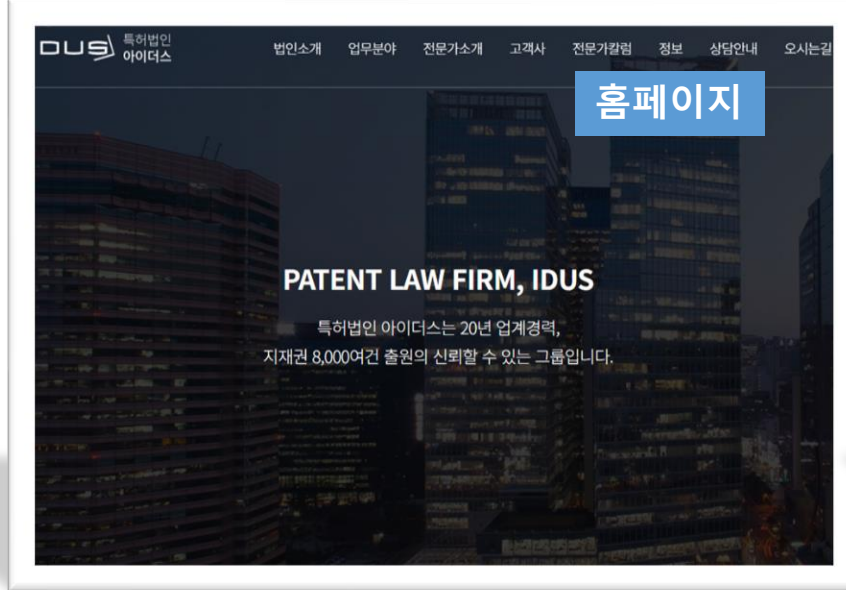


특허법인 아이더스 업무영역

본 법인에서는 해외 출원/등록, 심판, 소송, 권리이전, 침해감정, 경고장 작성, 라이선스 계약체결, 등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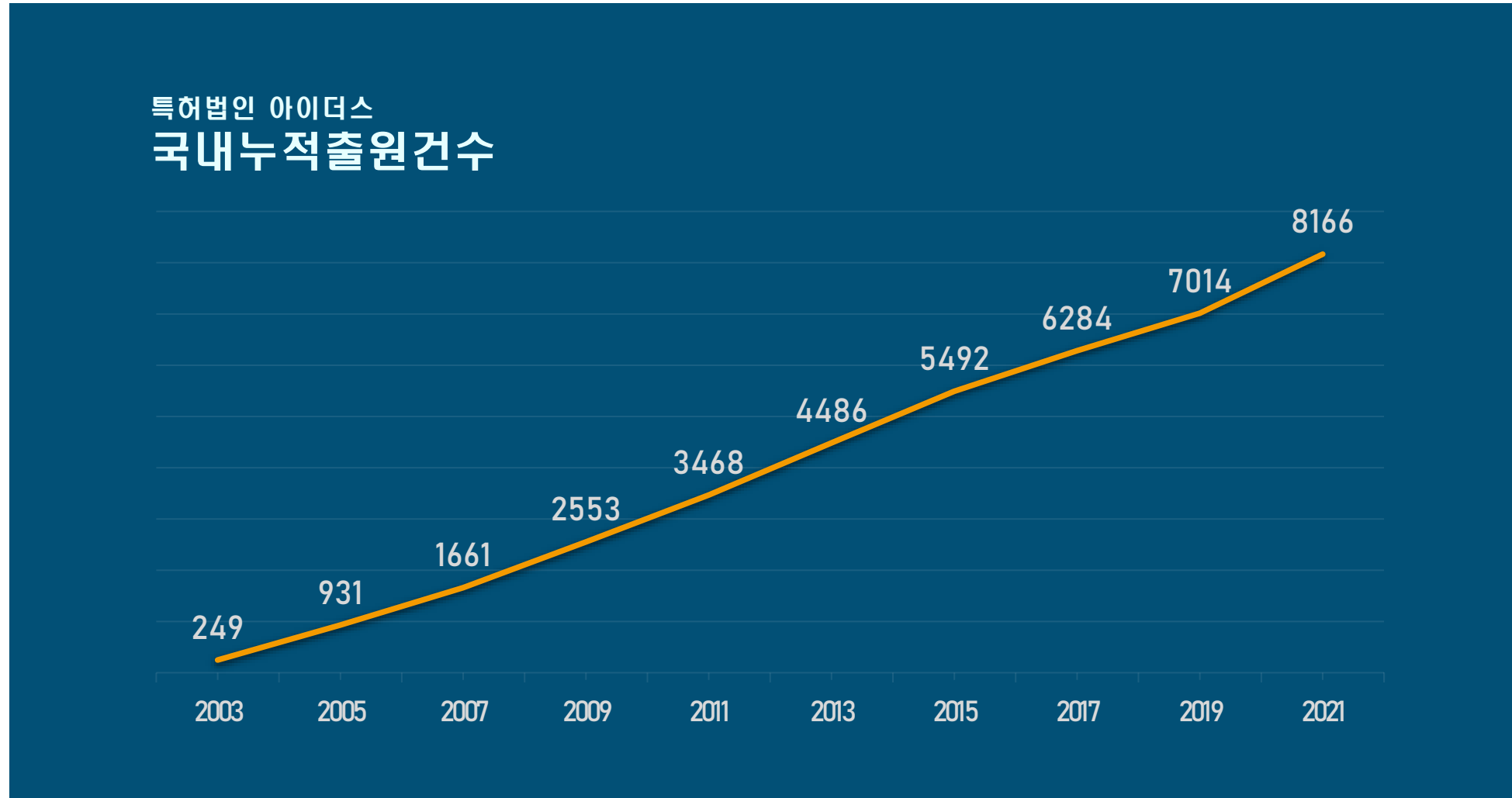


공식 소통 채널



20년 업력 및 지재권 약 8,000여건 출원

본 법인은 지난 20여년간 8,000여건 이상의 지식재산권 출원을 수행한 풍부한 노하우를 자랑합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 해외지재권 로펌 네트워크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2005년 부터 해외 지재권 출원에 매진하여 해외 30여곳의 로펌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hina

CN-KnowHow/CSPTAI



European union

GLP



United states

Rabin & Berdo



Russia

Prozorovsky



Hong Kong

BOSRAM



Vietnam

TRUSTLAW



Taiwan

Wenping



Janpan

Ishida IP



India

HK ACHARY



Egypt

AGIP



Brasil

UNION ANDINA



Canada

Ade Company



Colombia

UNION ANDINA



Mexico

UNION AND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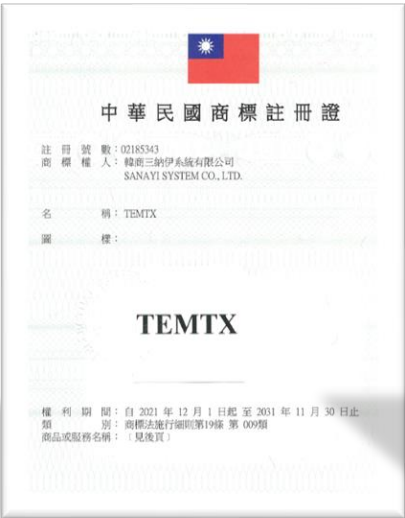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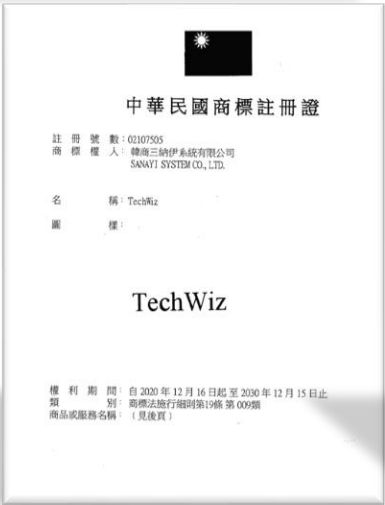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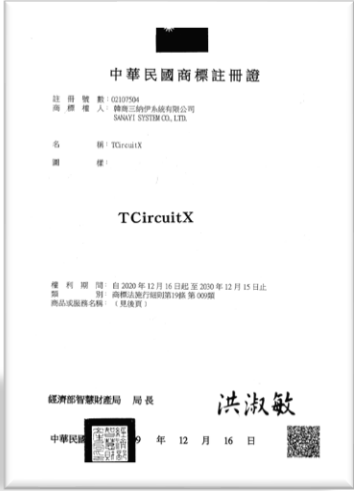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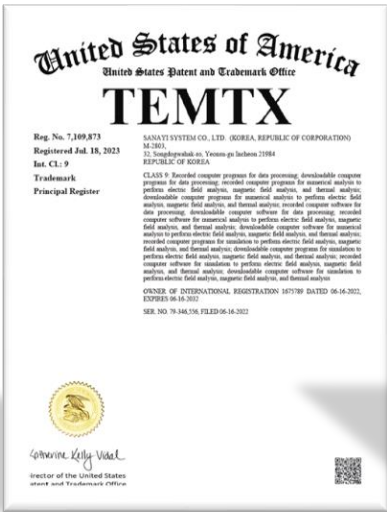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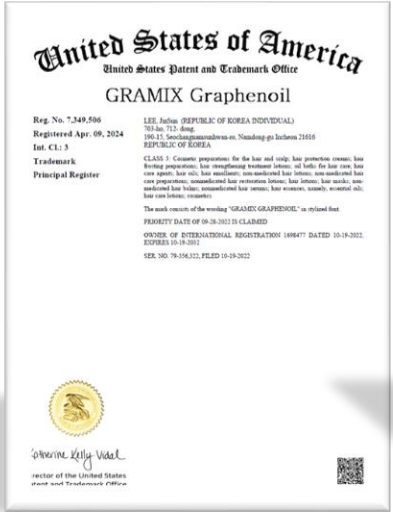


Ecuador

UNION AND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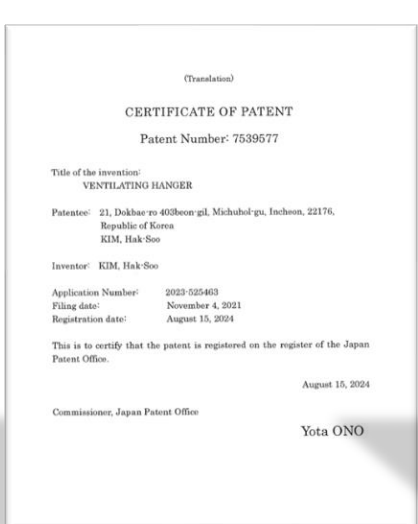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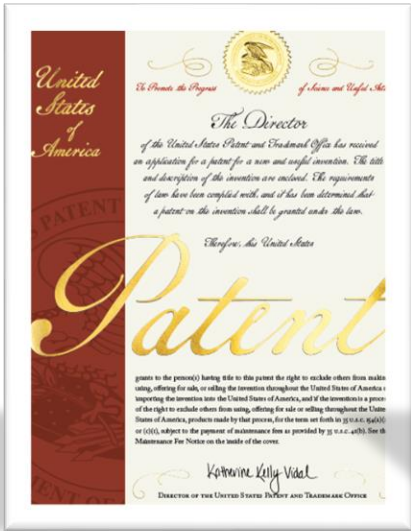
최근 해외상표 등록실적

본 법인은 해외국가별 최고의 현지 파트너 특허사무소와 협력하여 국가별 심사특성을 이해하여 등록가능성을 제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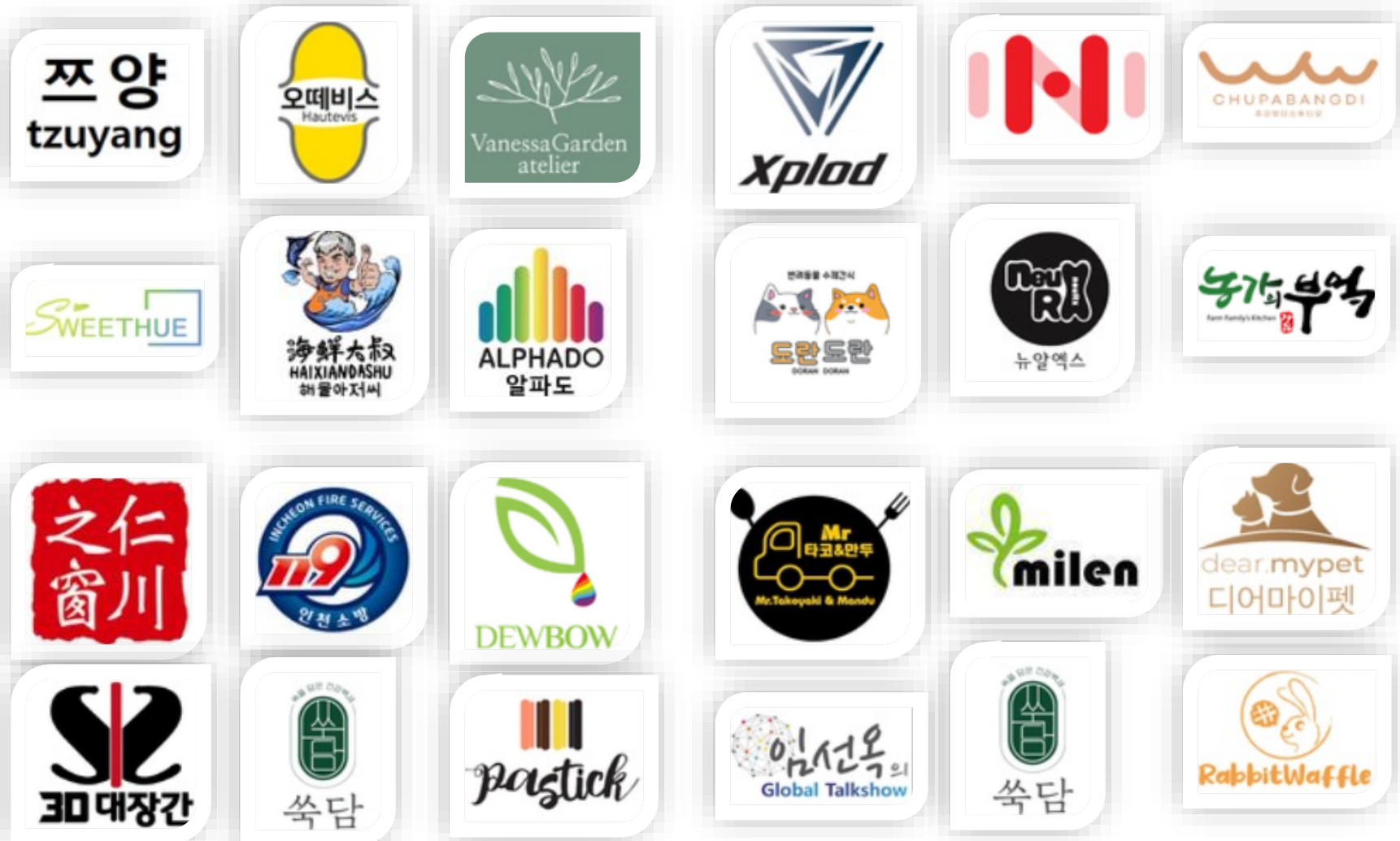
최근 해외특허 등록실적

본 법인은 해외국가별 최고의 현지 파트너 특허사무소와 협력하여 국가별 심사특성을 이해하여 등록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최근 국내상표 등록실적

본 법인은 로고 디자인, 상표의 식별력 판단, 유사판단 등 상표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상표등록률은 95%으로서 독보적입니다.



최근 사업 수행실적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매년 지재권 분야에서 다수의 정부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실력이 검증된 신뢰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

- 2020 정부사업 2020년 경기지식재산센터 IP 나래사업 - 필라멘트 와인딩 시스템
- 2020 정부사업 2020 인천지식재산센터 인천광역시 소유 업무표장 권리화 사업
- 2020 특허동향조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철도차량부품 특허동향 조사
- 2020 특허동향조사 한국철도기술 연구원 - 경량고속대차 특허동향 조사
- 2021 정부사업 2021년 인천지식재산센터 IP디딤돌사업
- 2021 정부사업 2021년 경기지식재산센터 IP 바로지원사업 - 애플파이 생산장치
- 2021 정부사업 2021년 인천재산센터 IP 바로지원사업 - 친환경 증착 설비
- 2021 특허동향조사 제동디스크 특허전략 수립
- 2021 특허동향조사 철도용 충격흡수 연결기 특허동향조사
- 2021 정부사업 2021년 인천지식재산센터 특허-디자인 컨버전스 지원사업
- 2022 정부사업 소상공인 상표출원지원사업
- 2022 인천테크노파크 연구개발 기획컨설팅 사업
- 2023 정부사업 소상공인 상표출원지원사업
- 2023 정부사업 IP 디딤돌 프로그램 아이디어 권리화 사업

02 특허법인 아이더스 변리사 소개

#소속변리사

특허법인 아이더스 소속변리사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대검찰청 경력의 지재권 전문가 그룹입니다.



김무경 변리사

- 前 특허청 특허심판연구관
- 前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배진효 변리사

- 前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 前 특허청 심사관



이영수 변리사/변호사

- 前 특허청 소송수행관
- 前 특허청 심사관



배진효 변리사

한양대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출신으로 특허청 심사관, 특허심판원 소송수행관,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을 역임한 기술 및 지식재산권 전문가입니다.

특허청 심사관으로 약 3,000여건 특허출원을 심사하였고, 특허청 소송수행관으로서 특허소송에 박식할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에서 수백 건의 특허, 상표, 디자인, 부정경쟁, 영업비밀,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을 자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배진효 변리사는 고객 기업의 이익을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지식재산권 전체를 해안하는 능력으로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하여 고객의 이익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학력

- 1992 한양대 기계공학과 학사
- 1994 한양대 기계공학과 석사
- 1998 한양대 기계공학과 박사

경력

- 1998 한국전력기술(주)
- 2005 특허청 심사관 [운반기계심사관, 건설기술심사관]
- 2012 특허심판원 정책사무관
- 2014 특허청 소송수행관 [특허법원, 대법원 기계분야 특허소송 담당]
- 2015 특허청 심사관 [로봇자동화심사관]
- 2016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형사사건 자문]
- 2020 특허법인 아이더스 대표변리사
- 2021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위원
- 2021 무역위원회 지식재산권 자문단 위원
- 2021 한국전지산업협회 자문단 위원

수상

- 2009 특허청장 표창(우수심사관)
- 2010 특허청장 표창(우수심사관)
- 2013 특허청장 표창(특허행정유공자상)
- 20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윤석열) 표창



학력

1995 KAIST 기계공학과 학사

김무경 변리사

KAIST 기계공학과 졸업, 제35회 기술고등고시에 합격한 후 특허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특허청에서 심사, 특허심판원에서 심판연구관 및 관련 법령 업무를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지식재산권 침해사건 자문을 수행한 전문가입니다.

김무경 변리사는 대검찰청에서 경험한 특허 등 지재권 쟁점에서의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창업·연구개발·생산·판매 등의 과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특허 등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경력

- 1999 제 35회 기술고시 합격
- 2000 특허청 심사관 [일반기계심사과, 공조기계심사과, 응용소자과(BM발명심사)]
- 2008 특허심판원 심판연구관
- 2011 대검찰청 특허수사자문관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형사사건 자문]
- 2013 특허심판원 정책서기관
- 2015 특허청 기술서기관 [에너지심사과 파트장]
- 2016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정책서기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2018 미국 Washington DC 소재 LawFirm Rabin&Berdo 직무훈련
- 2019 특허청 기술서기관 [주거생활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 특허팀장]
- 2020 특허법인 아이더스 대표변리사

주요저서 / 논문 / 기고문

- 2012 지식재산권범죄 수사실무 제1판(공저)

수상

- 2007 특허청장 표창(특허행정혁신)
- 2010 특허청장 표창(특허행정혁신)
- 2011 특허청장 표창(우수심사관)



이영수 변리사/변호사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학사 및 석사 졸업, 제35회 기술고등고시 합격한 후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특허청 심사 업무, 특허청 소송수행 업무를 역임한 지식재산전문가입니다.

변호사시험 1회 출신으로 2012년 변리사/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변호사 업무는 지식재산권 사건 (특허사건 중심)만을 전문으로 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 겸 변리사입니다.

학력

- 1994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학사
- 1996 서울대 제어계측공학과 석사
- 2012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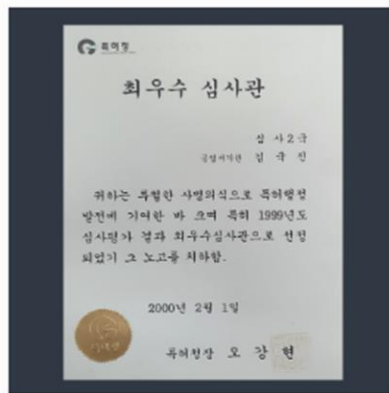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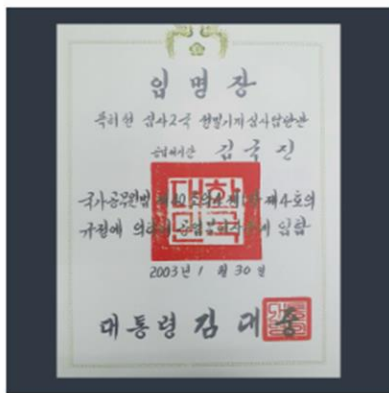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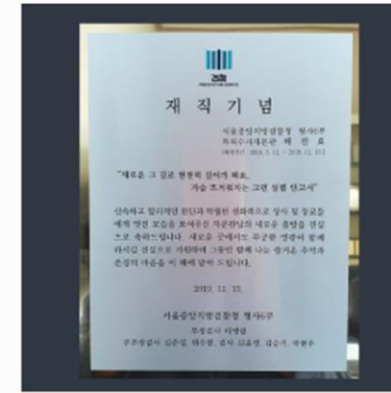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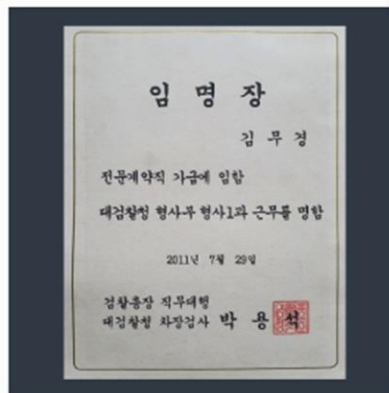
- 1999 제35회 기술고시 합격
- 2000 특허청 심사관 [전기과, 컴퓨터과, 영상과]
- 2009 특허청 소송수행관 [특허법원, 대법원 전기전자분야 특허]
-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6 특허법원 민사 조정위원
- 2017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자문위원
- 2018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위원

주요저서 / 논문 / 기고문

- 2020 특허등록을 받았는데 왜 특허권 행사를 못 하나요?(단독 저자)
- 2005 컴퓨터 관련발명 심사기준(공동편집위원)

수상

- 2002 특허청장 표창(모범심사사례)
- 2008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표창(우수 송무수행)
- 2010 특허청장 표창(PCT 우수심사)



03 수출바우처 서비스 소개

본 법인은 해외출원 / 등록 / 사후관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2005년 부터 해외 지재권 출원에 매진하여 해외 30여곳의 로펌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 해외 지재권의 발생부터 소멸될 때까지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해외 연차료 납부, 해외 갱신등록료 납부, 해외 권리이전, 짝통제품대응 등 모든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행합니다.
- ❖ 특허법인 아이더스의 특허관리 DB 시스템은 고객사의 해외출원/등록이력관리, 기일관리, 연차관리, 회계관리, 업무관리를 위하여 최적화된 시스템입니다.

본 법인은 해외 지재권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 축적하고 있습니다.

- ❖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18년 업계경력, 지재권 8,000여건 출원의 신뢰할 수 있는 그룹입니다.
- ❖ 특허법인 아이더스 소속변리사는 특허청, 특허심판원, 검찰청 경력의 지재권 전문가 집단입니다.

특허법인 아이더스 해외지재권 로펌 네트워크

특허법인 아이더스는 2005년 부터 해외 지재권 출원에 매진하여 해외 30여곳의 로펌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hina

CN-KnowHow/CSPTAI



European union

GLP



United states

Rabin & Berdo



Russia

Prozorovsky



Hong Kong

BOSRAM



Vietnam

TRUSTLAW



Taiwan

Wenping



Japan

Ishida IP



India

HK ACHARY



Egypt

AGIP



Brasil

UNION ANDINA



Canada

Ade Company



Colombia

UNION ANDINA



Mexico

UNION AND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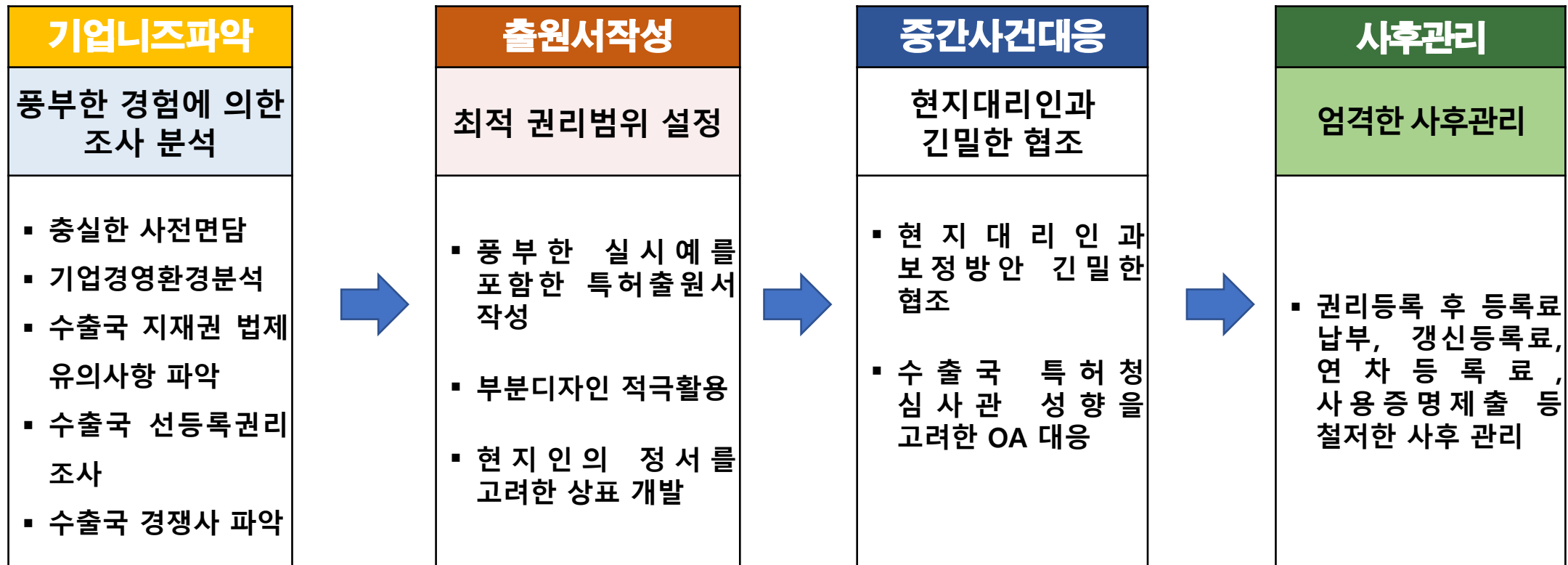


Ecuador

UNION ANDINA

특허법인 아이더스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서비스

1 해외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출원 및 등록 서비스



특허법인 아이더스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서비스

2 서비스 제공 방안

❖ 서비스 제공대상

- 해외진출 계획수립 및 완료한 수출기업

❖ 서비스 제공 소요기간

- 해외특허출원(통상 1개월), 해외상표, 디자인출원(통상 15일)

❖ 표준단가 및 산출근거

- 업무 범위에 따라 비용 협의

특허법인 아이더스 수출바우처 사업 지원서비스

3 기타 지원사업

-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 등록**
- ❖ **미국, 필리핀 등 상표 사용증명서류 제출**
- ❖ **해외 연차등록료 납부**
- ❖ **해외 상표갱신등록료 납부**
- ❖ **해외출원 거절결정 대응**
- ❖ **수출국가 모방품 대응**
- ❖ **수출국가 권리자 발송 경고장 대응**

해외상표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마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란?

마드리드 시스템은 두 조약,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두 조약은 서로 독립적이고 병렬적인 관계이므로, 기속되는 조약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드리드 협정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이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8년 9월 1일부터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 모두에 가입한 회원국에 대해 마드리드 의정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세계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로서 WIPO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합니다.

마드리드 협정의 공식명칭은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으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이 성립된 지 8년 후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으로 18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되었습니다.

해외상표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마드리드 가입국 현황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호주, 알제리,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리아, 앤티가 바부다, 바레인, 부탄, 보츠와나,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콜롬비아, 쿠바, 부탄, 브루나이, 덴마크, 이집트,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아, 가나, 그리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란, 이스라엘, 인도,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케냐,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라이베리아, 리투아니아, 레소토,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몽고, 모로코, 멕시코, 몬테네그로, 모잠비크, 모나코, 나미비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만,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르완다, 몰도바, 러시아, 산마리노, 슬로바키아, 스와질란드, 상투메 프린시페, 슬로베니아, 스웨덴, 시에라 리온, 스페인, 스위스, 싱가포르, 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튀니지, 태국, 투르크메니스탄,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영국, 잠비아, 모로코 등

마드리드시스템 회원국 명단조회

※마드리드 미가입국

말레이시아, 대만(타이완), UAE, 아르헨티나, 미얀마, 이라크,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레바논, 쿠웨이트 등

해외상표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마드리드 시스템의 특징

★ 절차의 간소화 및 비용절감

국내에서 등록받거나 출원한 상표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하나의 언어로 작성된 하나의 국제출원을 하나의 본국관청에 제출하고 한번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하나의 번호로 된 국제등록을 획득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국가의 관청에 각각 출원을 제출하고 각각의 수수료를 납부하는 등의 절차를 대체하여 한번의 출원으로 복수의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게 함으로써 출원인의 편익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국제출원단계에서 각 개별국에 대한 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어 대리인 선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권리취득 여부의 명확성

지정국관청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1년 6월까지 연장 가능, 이의신청의 경우 예외)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그 상표는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은 일정 기간 내에는 각 지정국에서의 상표권 취득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 지정국 추가 가능

마드리드 의정서에 새로 가입한 국가 또는 기존의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한 국가에서 추가적으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등록 후에 그 국가를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를 간편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명칭변경, 주소변경, 갱신, 상표권의 양도 등의 변동사항을 국제사무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국제사무국에 한번 신청하면 국제등록부에 기록되고, 국제사무국에서 각 지정국관청에 통보해 주어 각 지정국관청에 개별적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마드리드 루트를 통하여 등록된 상표의 등록번호 및 각국에서의 진행상태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특허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해외출원의 필요성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여 특허등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의 효력은 우리나라의 영토안에만 미칩니다. 이를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수출기업의 경우 수출국에 특허권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수적인데 동일자에 여러 국가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비용이나 관리측면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특허를 출원한 후 12개월 이내에 다른 국가에 출원하면 특허가능요건을 판단할 때 한국에 출원한 날짜로 인정하여 심사하는데 이를 우선권(priority)제도라고 합니다.

해외특허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전통적인 출원방법(Traditional Patent System)

특허획득을 원하는 모든 나라에 각각 개별적으로 특허출원하는 방법으로 Paris루트를 통한 출원이라고도 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 국가에 출원하여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통적인 paris root를 이용하여 출원하는 경우에도 다수의 국가에 1년안에 번역문 제출 등 해외출원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비용이나 관리측면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에 설명하는 PCT에 의한 출원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행정적 업무는 WIPO(세계지식재산기구)의 국제사무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세계지식재산권을 관장하는 UN전문기구로서 WIPO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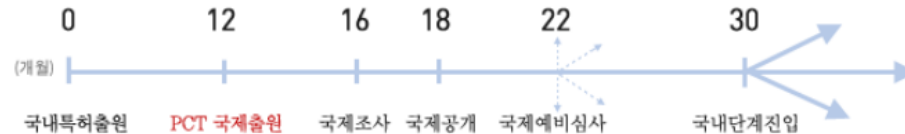
해외특허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PCT에 의한 출원방법(PCT System)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은 PCT 수리관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내출원이 있는 경우 한글로 작성된 특허출원서를 한글로 PCT양식에 맞도록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PCT 국제출원을 하였다고하더라도 해당국가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국내출원일로부터 약 30개월 이내에 해당국가의 언어로 번역문을 제출한 후 특허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이를 국내단계라고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마다 특허제도가 다르므로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한국특허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PCT출원 후 우리나라 특허청에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국내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